

##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### ■ 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은행법 제 30 조의 2(금리인하 요구), 은행법시행령 제 18 조의 4(금리인하 요구), 은행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(금리인하 요구 등) 및 당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21 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 제 3 항에 의거 **고객이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**를 의미하며, 은행은 고객이 제출한 관련 서류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함. 다만,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.

### ■ 대상 대출상품

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기업여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됨. (※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### ■ 신청요건

- **재무상태 개선:** 이익 증가,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- **신용도 상승:** 회사채 등급상승, 추가담보 제공,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- **기 타:**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,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

### ■ 신청방법

- 「한도변경 · 기한연장 · 조건변경 신청서」 및 금리인하 요구 관련 일체 증빙서류를 제출

### ■ 신청결과 통지

-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심사를 거쳐 **10영업일 이내**에 전화나 이메일,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

### ■ 유의사항
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